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2일 20시 36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여성가족과	3
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	3

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

2017.07.04 조회수 221 등록자 신은주
10:40

- ✓ **민원사무명** **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**
- ✓ **민원내용*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 복지시설을 설치, 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- ✓ **관계법령** **청소년복지 지원법**
- ✓ **구비서류**
 -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
 - 정관 1부(법인에 한함)
 - 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에 한함)
 -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
 - 사업계획서 1부
 - 예산서 1부
 - 시설의 평면도(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) 및 건물의 배치도
 -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(시설장 포함)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
- ✓ **처리부서** **여성가족과**
- ✓ **협의부서**
- ✓ **접수** **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**
- ✓ **수수료**
- ✓ **처리기간** **20일**
- ✓ **기타사항**
- ✓ **흐름도**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 작성 → 신고증 교부
- ✓ **기타참고사항**

목록

이전글

다음글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·휴지·재개 신고

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